

윤리경영 옴부즈만 회의 의사록

2014. 5. 20

한국주택금융공사

1. 日 時 : 2014년 5월 20일

개 회 11시 00분

폐 회 11시 50분

2. 出席委員 : 대표 옴부즈만 정00

옴부즈만 정00

옴부즈만 홍00

3. 案 件 : (1)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2) 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 개정(안)

(3) 윤리경영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안)

(4) 14년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안)

5. 會議經過

□ 사회자

회의에 앞서 대표 옴부즈만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상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의견에 따라 정00 변호사님이 대표 옴부즈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첫 번째 안건은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원의 정치행위 제한근거 마련, 사업자보증 클린 안내문 도입입니다.

□ 대표옴부즈만

임원의 정치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원회 가입이 법령에 위반한 부당한 활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문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례와 같이 ‘정당이나 후원회 가입’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게 보다 명확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관련 조항은 제2항에서 대외활동, 제3항에서 대내활동을 각각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의미있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 옴부즈만 정00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보다는 공사 개정(안)이나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례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정당이나 후원회 가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나 후원회 가입 등의 활동 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라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렇게 해석되는 한 법령 저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달리 해석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옴부즈만** 한편 사업자보증 클린안내문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하는 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옴부즈만 정00**, 네 이견 없습니다.
홍00

☐ **사회자**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 개정(안)입니다.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장 또는 감사의 외부 메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옴부즈만 정00** 내부부조리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 **사회자** 윤리담당책임자는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옴부즈만 정00** 사장 또는 감사에게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처리결과 통지절차를 명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사회자** 다음 안건은 윤리경영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안)이며 반부패 청렴 제도개선 권고, 고충민원의 자문을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옴부즈만 전원** 이견 없습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14년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에 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매년 윤리 경영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권익위 지침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ombudsman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ombudsman**

이상 논의된 바와 같이 임직원 행동강령 및 내부 부조리신고 처리기준 개정 관련 개선방안을 권고합니다.

위와 같이 심의함.

대표 음부즈만

정00 (인)

음부즈만

정00 (인)

음부즈만

홍00 (인)